

2026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6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승강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승강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승강기 스마트화를 위한 주요 부품 및 장비개발 지원
- 공고기간 : 2026. 3. 12.(목) ~ 2026. 4. 10.(금) 17:00 까지
- 지원규모 : 2개 R&D과제 / 과제당 73,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¹⁾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쏘 분야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2026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 개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승강기 쏘 분야 주요 부품 및 장비 스마트화 기술개발	2026. 5. ~ 2027. 5.	과제별 73,000천원 이내	AI 등 첨단기술 기반 승강기 스마트화 기술개발 과제 우대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승강기 제조업(29162),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29163),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28123) 이외에 승강기 관련 전후방산업도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

2 세부내용

○ 지원내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자격요건	지원금액
자유공모	2026. 5. ~ 2027. 5.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과제당 73,000천원 이내

< 스마트 승강기 기술분야 예시 >

구분	주요 기술	세부 기술
이동	첨단 미래형 승강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수평이동 승강기 시스템 기술 AI 기반 승강기 운행 최적화 및 배차제어 기술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승강기시스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 승강기 운전제어 기술 승강기 구동장치 및 전력변환 시스템 기술 경량화 승강기 구조 및 설계 기술 AI 기반 승강기 에너지 관리 및 효율 최적화 기술
운영·안전	지능형 승강기 운영 및 안전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고장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 시스템 상태 원격감시 및 제어 기술 재난·재해 대응 안전 승강기 기술 AI 기반 승강기 예지보전 및 이상상태 감지 기술

* 상기 기술은 예시이며, AI 등 첨단기술 기반 승강기 스마트화 관련 기술개발 과제 우대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임
-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73,000	3,650	3,650	80,300
중견기업		5,475	5,475	83,950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2.(목) ~ 2026. 4. 10.(금)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 까지 ‘완료 및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주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점사항,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 서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1부(원본 1부)	서식 (첨부1)
2	주관	중복지원 제한 협약서	1부	서식 (첨부2)
3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	1부	서식 (첨부3)
4	주관/참여	서약서	1부	서식 (첨부4)
5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주관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7	주관/참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9	주관/참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공장등록증)	1부	
10	주관/참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1	주관	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첨부5)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업로드

- (이메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wndus9966@cbist.or.kr)

○ 제출요령 :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 제출 불가

4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평가(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 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지원금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현금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30년) 전담 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²⁾ 및 증빙자료 일체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제공

5 평가기준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추진전략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기술성 (30점)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및 AI 등 첨단기술 활용 수준 	20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10
사업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가능성 ■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0
기술개발 능력 (30점)	기술개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20
	참여기업(위탁)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 기자재 보유 정도 ■ 신청사업과 생산품과의 연관성 	10
성과창출 (10점)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10

*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구매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6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既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내로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 정부·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 실패하거나 부정 사례가 있었을 경우
-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및 접수	·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26. 3. ~ 4.	과기원
↓			
제출서류 검토	· 제출 미비 서류 검토 · 사업 관련 제출서류 종합평가	'26. 4.	과기원
↓			
선정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통보	'26. 4.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과제 승인	'26. 5.	충청북도
↓			
협약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 1차 지원금(50%) 지급	'26. 5.	과기원, 주관기관
↓			
사업수행, 중간점검	· 기술개발 진행 ·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26. 5. ~ '27. 5. ('27. 1. 중간점검 예정)	주관기관, 과기원
↓			
2차 지원금 지급	· 2차 지원금(50%) 지급	중간점검 이후	과기원
↓			
결과평가 및 정산	· 결과평가 및 사업비 회계 정산	'27. 6.	평가위원회 및 회계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

담당자 소속	전화	이메일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043-210-0846	wndus9966@cbist.or.kr